

의안번호	제 842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**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1년 10월 1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4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1년 10월 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「정부조직법」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과
- 보건·환경에 관한 각종 검사 및 시험 등에 대한 수수료 납부에 있어서 주민편의를 위해 납부 방법의 다양화라는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「정부조직법」 개정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(안 제3조)
(현행) 질병관리본부
(변경) 질병관리청
- 수수료 납부방법 변경(안 제3조)
(현행) 수입증지
(변경) 수입증지, 신용카드, 현금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
-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한 수수료 납부 삭제(안 제3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「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」”을 “「질병관리청 시험의뢰 규칙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수입증지(이하 “수입증지”라 한다)로”를 “수입증지, 신용카드, 현금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으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수입증지로”를 “충청북도 수입증지, 신용카드, 현금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으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수수료 및 징수방법) ① 검사, 시험 등의 수수료는 「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·검사의뢰 규칙」, 「<u>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</u>」 및 「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」에서 정한 수수료에 의하며, 동 규칙에 기재되지 아니한 품목은 이에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검사·시험 등을 의뢰할 때에 충청북도 <u>수입증지(이하 “수입증지”라 한다)</u>로 납부하여야 하며 재발급 청구 시에도 또한 같다.</p> <p>③ 검사·시험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현지출장을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필요한 실비를 <u>수입증지로</u>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3조(수수료 및 징수방법) ① -- ----- ----- ----- 「<u>질병관리청</u>」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----- ----- -- <u>수입증지, 신용카드, 현금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으로</u> ----- -----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충청북도 수입증지, 신용카드, 현금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으로</u> - -----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⑤ 제2항과 제3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한 수수료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」 제4조의2에 따른다.

⑤ <삭 제>

관련법령 발취

□ 정부조직법('20. 8. 11. 개정, 20. 12. 10. 시행)

제38조(보건복지부)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생활보호·자활지원·사회보장·아동(영·유아 보육을 포함한다)·노인·장애인·보건위생·의정(醫政) 및 약정(藥政)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

② 방역·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·시험·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청을 둔다.

③ 질병관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,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,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

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('17. 7. 26. 개정, 시행)

제29조(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)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·수입인지·수입증지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